

미국 출장 및 파견 등 관련 가이드라인

HL Mando



목 차

I. 가이드라인 개관.....	3
1. 목적	3
2. 적용 대상 체류 자격 및 비자	3
II. 비자 종류별 개요 및 요건.....	4
1. 미국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개관	4
2. L-1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주재원 비자)	6
3. 배우자 및 동반 가족 비자 (L-2 비자).....	11
4. B-1 비자 및 ESTA (단기 상용 방문자)	13
5. E-1/E-2 비자 (무역인/투자자 비자).....	19
III. 출국 전 사전 준비 절차.....	23
1. 주재원(L-1) 비자.....	23
2. 단기출장자(B-1/ESTA).....	24
3. 무역인/투자자(E-1/E-2) 비자.....	24
IV. 입국심사 대응 및 초기 정착.....	26
1. 입국 목적 진술	26
V. 체류 중 준수사항.....	30
1. 준수 사항.....	30
VI. 연장 및 복귀 절차.....	31
1. 연장 및 복귀 절차 관련 준수 사항.....	31
2. 동일 인물의 재파견 제한	31
VII. 체포·구금·조사 대응 행동요령.....	32
1. 기본 원칙.....	32
2. 즉시 연락 체계	33
3. 진술 시 유의사항.....	33
4. 구금(Detention) 시 조치.....	34
5. 사후 보고 및 재발 방지.....	34

I. 가이드라인 개관

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HL Mando Global 임직원(한국, 중국 등 미국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의미함. 이하 같음)이 미국에 위치한 HL Mando 자회사로 출장 또는 파견을 가거나, 기타 업무상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이하 통칭하여 “출장 등”)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필요한 법적 체류 자격과 관련 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직원이 사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미국의 이민법·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미국 내 체류자격 위반 등 법적 리스크를 예방 또는 대응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체류 자격 및 비자

- 1) **L-1 비자:** HL Mando Global 임직원이 미국 HL Mando 자회사에 관리자(L-1A) 또는 전문지식보유자(L-1B)로 파견되는 경우
- 2) **B 비자 및 ESTA:** HL Mando Global 임직원이 단기 상용출장, 회의 참석, 기술지원, 감독 또는 교육 등 단기파견 목적으로 미국 HL Mando 자회사를 방문하는 경우¹
- 3) **E-1 /E-2 비자:** HL Mando Global 이 미국 HL Mando 자회사와 상당한 규모의 무역거래를 하거나 미국 HL Mando 자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HL Mando Global 의 경영진·관리직·기술 전문 인력을 미국 HL Mando 자회사에 파견하는 경우. E-1 비자의 경우, 미국법인과 상당한 양의 무역을 진행하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E-2 비자보다 까다로움. 대부분의 경우 파견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¹ B 비자의 경우 B-1(상용)/B-2(관광)의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광 목적인 B-2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II. 비자 종류별 개요 및 요건

1. 미국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개관

외국인이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고려할 있는 비이민 비자(사전 허가에 따라 비자가 면제되는 ESTA 포함)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종류	주요 특징	출장 등 관련성
H 비자 (전문직근로 등)	<p>[H-1B] 전문직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종 종사자로 해당 직무와 관련된 4년제 학사 학위 혹은 관련 경력 필요 취업 시 영주권 신청 가능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 필요 비자 발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함 <p>[H-2B] 비농업 분야의 임시 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에서 일할 미국 근로자가 없음을 증빙 필요 	X
L 비자 (주재원)	<p>[L-1A] 한국법인 임원·관리자가 미국 내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로 파견되어 근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임원(executive)-관리자(manager) 대상 비자 신청 전 3년 내 1년 이상 한국법인 등 해외 근무 경력 필요 <p>[L-1B] 한국법인 특수지식(specialized knowledge) 보유 직원이 미국 법인으로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기술·프로세스·제품 관련 고급 전문지식 보유 실무진 대상 비자 신청 전 3년 내 1년 이상 한국법인 등에서 근무 필요 <p>[L-2 비자] L-1A 또는 L-1B 소지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부여</p>	O

O 비자 (탁월한 능력자)	[O-1A]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전문가 [O-1B] 예술, 영화, 방송 분야의 저명한 예술가 및 연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비자 모두 업계 평균 상회 수상, 언론보도, 기여 등 실적 요구	X
P 비자 (국제 공연·체육)	[P-1A] 국제적 공인 운동선수 [P-1B]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이너 [P-2/3] 상호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 전수자	X
E 비자 (무역·투자가)	[E-1] 상사 주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무역조약을 체결한 국가 소속 기업의 과거 1~2년간 전체 무역량 중 대미 교역량이 50% 이상• 주로 경영진급, 실무진급 대상• L-1 비자에 비해 간소한 절차 [E-2] 투자회사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법인이 상당한 금액을 미국 내 투자, 실질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파견자가 관리직 혹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있는 주재원임을 증명해야 함• L-1 비자에 비해 간소한 절차	O
I 비자 (언론인)	• 외신 기자, 방송인, 다큐멘터리 제작자 등 언론 매체 종사자의 미국 내 공식 취재·보도활동 수행	X
R/Q 비자 (종교/문화교류)	[R-1] 비영리 종교단체 소속 성직자, 선교사 등 종교활동 종사자 [Q-1] 미국 내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외국 국적자	X
B 비자	[B-1] 단기 상용 목적의 한정적·임시적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비즈니스 컨퍼런스, 계약 협상 등 업무 목적의 방문• 90 일 이내 체류가 원칙이나 1회 연장 가능 [B-2] 단기 관광 목적의 한정적·임시적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관광, 지인·친지 방문, 치료 등 목적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일 이내 체류가 원칙이나 연장 가능 	
기타 - ES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또는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 • 비자가 면제되는 사전 여행 허가 시스템 • 최대 90 일 체류 가능 • ESTA(무비자 프로그램)는 형식적으로는 “비자”가 아니지만, 입국 시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B-1(단기 상용) 또는 B-2(관광) 중 하나로 간주됨 	○

※ HL Mando Global 의 출장 등 임직원에게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L-1 비자, B-1 비자, E-1 비자의 구체적 내용, 특징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 참고.

2. L-1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주재원 비자)

(1) 요건

1) 기업 간 관계 요건

- 한국법인(본사)의 미국 내 모회사·자회사·계열회사 존재가 필수 사항
-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하거나,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당 미국 법인은 한국 법인의 ‘Subsidiary(자회사)’로 간주됨.

8 C.F.R. § 214.2(l)(1)(ii)(K)

Subsidiary means a firm,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of which a parent owns,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half of the entity and controls the entity; or owns, directly or indirectly, half of the entity and controls the entity; or owns, directly or indirectly, 50 percent of a 50-50 joint venture and has equal control and veto power over the entity; or owns, directly or indirectly, less than half of the entity, but in fact controls the entity.

-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 ✓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의 지분 구조도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 한국법인과 미국법인간 지배·통제 관계를 보여주는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 ✓ 실제로 운영 중인 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신고서류

- 미국법인은 실질적 사업체로서 운영되고 있어야 함
- 미국에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이 존재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신규법인의 실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재원의 직무 요건

- L-1 비자를 받게 될 주재원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유형	내용
L-1A	본사의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로서 기업 의사결정 권한 및/또는 직원 관리 권한이 있는 자 (단순 현장 관리자나 중간 관리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 있음)
L-1B	기업 고유의 상품·서비스·프로세스 등에 관한 전문지식 보유자 (일반적인 업무지식이 아닌 제품 및 서비스, 장비 등에 대한 특수지식을 보유해야 함)

3) 근무 이력 요건

- 주재원으로 파견될 자는 입국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모회사·지점·계열사·자회사 등 동일 법인체 계열에 해당하는 한국 내 법인 등에서 최소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력이 필요함.

8 C.F.R. § 214.2(l)(1)(ii)(A)

Intracompany transferee means an alien who, within three years preceding the time of his or her application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employed abroad continuously for one year by a firm or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or parent, branch, affiliate, or subsidiary thereof, and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in order to render his or her services to a branch of the same employer or a parent, affiliate, or subsidiary thereof in a capacity that is managerial, executive, or involves specialized knowledge.

- 형식적, 명목상 근무한 이력은 인정되지 않고, 급여 내역, 고용계약서, 4 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 근무사실을 소명해야 함

(2) 비자 발급 절차

1) 청원서(I-129S) 작성 및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제출

- 주한 미 대사관에 제출할 청원서(I-129S 양식) 제출 (미국에서 USCIS 신청 시 I-129 준비)²
-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조직도, 지분 관계도 등), 주재원 자격,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요구됨
- 주한 미대사관의 경우, 인터뷰 전 적어도 48 시간 이전에 (business day 기준, 공휴일 제외)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주한 미대사관 이외에 다른 국가 소재 공관들의 경우, 절차 및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2)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 인터뷰시 준비한 I-129S 를 제출
- 인터뷰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지참해야 함
 -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 파견자 여권, 가족관계 증빙 서류(동반 가족 포함 시)
 -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 ✓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조직도, 지분 관계도 등), 주재원 자격,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

²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 양식이 달라짐에 유의. HL Mando 의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 만약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파견자에게 미국 이민 목적이나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도록 함.
 - ✓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 유지 증빙(재직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 고용계약서 등)
 - ✓ 가족관계 증빙
 - ✓ 한국 내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소유 사실 증빙
 - ✓ 미국 방문 목적 명확화

(3) 유효기간

- 신규 사무소(New Office L-1): **최초 1년 유효**, 이후 사업 실체(office setup, 고용 현황, 매출 증빙, 세금 신고자료 등) 입증 시 연장 가능
- L-1A: **최초 3년 + 이후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최대 7년)**
- L-1B: **최초 3년 + 이후 2년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최대 5년)**

(4) 특징 및 유의사항

- 고용계약서·파견명령서에 법적 고용주(Employer of Record)가 HL Mando Global(한국 본사) 임을 명시
- 현지 급여 또는 보수 지급 시 급여 신고(Payroll Reporting) 및 세금납부 의무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 미국 내 법인으로부터 급여, 보너스, 주거비 또는 기타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주는 연방 및 주(state)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급여세 보고(Form W-2, Form 941 등), 사회보장세(FICA) 및 의료보험세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게 될 수 있음.

(5) 허용되는 활동

- 이민국(USCIS)에 승인된 직무(description of duties), 근무지(location), 및 소속 법인(entity of assignment) 내에서의 업무 수행. 즉, 청원서(Form I-129) 및

청원 승인서(I-797)에 기재된 역할 및 기능적 책임의 범위 내 활동은 허용.

- ✓ 그룹 내 내부 프로젝트 수행, 기술 지원, 관리·감독, 전략 수립 등 파견 목적상 필수적인 활동 포함

예시: 본사 정책의 현지 법인 적용을 위한 업무, 기술이전, 교육, 감독, 품질관리, 운영지원 등

- ✓ 동일 그룹 내 법인 간 내부 보고, 회의 참석, 경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 등 비자 승인 목적에 부합하는 내부 업무 포함

예시: 경영회의 참석, 성과 예산에 대한 보고, 본사와의 협업 및 의사결정 참여 등

(6) 금지되는 활동

- L-1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 승인된 파견 직무 및 근무 범위를 벗어난 근로·영업활동 금지.

9 FAM 402.12-10 (U)

Under INA 214(c)(2)(F), an applicant who will serve in a capacity involv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will be stationed primarily at the worksite of an employer other than the petitioning employer or its affiliate, subsidiary, or parent (i.e., the worksite of a third party, such as a client company) is not eligible for an L visa if: (1) The applicant will be controlled and supervised principally by such unaffiliated employer; or (2) The placement of the applicant at the worksite of the unaffiliated employer is essentially an arrangement to provide labor for hire for the unaffiliated employer, rather than a placement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a product or service for which specialized knowledge specific to the petitioning employer is necessary.

- ✓ 승인서 및 관련 서류에 명시된 직무, 기능적 역할, 파견 대상 법인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일체의 업무는 미국 이민법 상 불법 취업활동(unauthorized employment)으로 간주될 수 있고, 비자 취소, 조기귀국 조치 또는 회사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

- 미승인 직무 수행 또는 직무 범위의 변경

- ✓ 예시: L-1B(전문지식보유자)로 승인된 인원이 관리자(L-1A)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 승인 없는 직무 전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승인된 파견 목적과 무관한 외부 근로·상업활동
 - ✓ 예시: 외부 프로젝트 참여, 자문 제공, 강연·컨설팅 등 승인되지 않은 업무 수행

- 파견 승인 직무 외의 노동성 활동(installation, manual operation 등)
 - ✓ 예시: 승인 직무 범위를 넘어선 장비 조작, 현장 설치·시공 등 물리적 노동은 L-1 비자 목적상 허용되지 않음.

3. 배우자 및 동반 가족 비자 (L-2 비자)

(1) 요건

-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만 21 세 미만 미혼 자녀는 L-2 비자로 동반 입국 가능함.

- L-2 비자 발급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 등 서류 제출 필요.

8 C.F.R. § 214.2(l)(7)(ii)

The spouse and unmarried minor children of the beneficiary are entitled to L nonimmigrant classification, subject to the same period of admission and limits as the beneficiary, if the spouse and unmarried minor children are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the beneficiary in the United States. Neither the spouse nor any child may accept employment unless he or she has been granted employment authorization.

(2) 비자 발급 절차

- L-1 주신청자의 승인서(Form I-797 등) 사본과 함께 L-2 비자 신청 절차(DS-160 작성, 인터뷰 예약, 비자 발급)를 진행해야 함.

- 미국 입국 시에는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가 발급하는 I-94 상에 “L-2” 또는 배우자의 경우 “L-2S” 등 표기가 있어야 함.

- 동반 입국이 어려울 경우 “following-to-join” 절차로 나중에 합류하는 방식도 허용됨.

(3) 유효기간

- L-2 비자의 유효기간은 L-1 주신청자의 체류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됨. 다만, 주신청자의 L-1 비자가 연장될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L-2 비자도 동시에 연장 신청하여야 함.

(4) 특징 및 유의사항

- 배우자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 신청 또는 자동 근로자격 부여 제도(미국 이민국 정책에 따라 적용 가능)에 따라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 가능. 단, I-94에 L-2S 확인 필요.
- 만 21 세 미만 미혼 자녀는 근로할 수 없으며, 학교 재학(초·중·고·대학)만 가능.
- 배우자 및 자녀는 반드시 L-1 주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 CBP 심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5) 허용되는 활동

- 배우자는 미국 내 기업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 및 사업 활동이 가능함.
- 배우자 및 자녀 모두 미국 내 학교, 대학교에 재학 가능함.
- 자녀는 무급 인턴십이나 학점 연계 활동 등 교육 목적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음.
- 동반가족은 미국 내에서 이동, 여행, 여권 갱신, 운전면허 취득 등 일반 생활 활동이 가능하며, 동반입국 후 미국 외 제 3 국 방문 후 재입국도 가능함.

(6) 금지되는 활동

- 배우자가 I-94 상 “L-2S” 등 근로허가 표기가 없거나 신분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미국 내 유급 근로(급여·수당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됨.
- 자녀는 어떠한 형태의 유급 근로(시급·월급·수당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됨.
- L-2 신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음(주신청자의 신분이 기반이 됨).
- L-1 주신청자의 비자나 신분이 종료·취소되면, 동반자의 L-2 신분도 즉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비정상 근로가 이민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음.

4. B-1 비자 및 ESTA (단기 상용 방문자)

(1) 요건

- **B-1 비자**
 - ✓ 미국 외 회사(한국법인 등) 소속 직원이 단기 상용(Business Visitor) 목적의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 적용됨.
 - ✓ 방문 목적이 미국 내 고용 및 현장근로가 아닌, 9FAM에서 허용하는 비즈니스 회의, 계약 협상, 교육 감독 (supervisory/training)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함.
- **ESTA (무비자, Visa Waiver Program)**
 - ✓ 국적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가입국 (대한민국 포함)이어야 하며, 사전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국 가능함.
 - ✓ 방문 목적은 B-1 과 동일하게 단기 상용 목적이어야 하며, 입국 후 활동은 9 FAM 402.2 (B-1 permissible activities) 기준을 따르게 됨.

(2) 비자 발급 절차

- **B-1 비자:** DS-160 작성 → 비자 인터뷰 예약 → 인터뷰 후 여권에 B-1 비자 스탬프 발급.
- **ESTA:** 사전에 ESTA 전자여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3) 유효기간

- **B-1 비자:** 실제 체류 기간은 입국 시 I-94에 기재되는 기간 (통상 3개월, 단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즉 총 6개월)에 한정됨.
- **ESTA:** 입국 시 부여되는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체류 자격 변경 또한 불가함.

(4) 특징 및 유의사항

- B-1 비자의 I-94 기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 국무성에서는 최소 45일 이전 연장 권고) <https://www.uscis.gov/i539online> 에서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 가능.

(5) B-1 비자 관련 허용되는 활동 (9 FAM 402.2-5 (B)(U), (E)(1)(U))

- 계약 협상, 회의 참석, 사업상 협의 또는 컨퍼런스 참가

9 FAM 402.2-5(B)(U)

Applicants should be classified B-1 visitors for business, if otherwise eligible, if they are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to: (1) Engage in commercial transactions which do not involve gainful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a merchant who takes orders for goods manufactured abroad); (2) Negotiate contracts; (3) Consult with business associates; (4) Litigate; (5) Participate in scientific, educational, professional, or business conventions, conferences, or seminars; or (6) Undertake independent research.

- 기술·서비스 관련 교육 또는 감독 (*Training / Supervisory Activity*)

- 장비구매계약에 포함된 장비 설치, 시운전 등의 경우에는 교육 또는 감독(*supervisory/training*) 범위 내에서의 활동은 허용

9 FAM 402.2-5(E)(U)

An applicant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o install, service, or repair commercial or industrial equipment or machinery purchased from a company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to train U.S. workers to perform such services.

- ✓ 장비구매계약에 포함된 장비 설치, 시운전의 경우, 계약서에 해당 서비스 또는 교육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인력이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전문지식(unique knowledge)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또는 감독(supervisory/training) 범위 내 활동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됨.

9 FAM 402.2-5(E)(1)(U)(a)

An applicant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o install, service, or repair commercial or industrial equipment or machinery purchased from a company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to train U.S. workers to perform such services. However, in such cases, the contract of sale must specifically require the seller to provide such services or training and the visa applicant must possess unique knowledge that is essential to the seller's contractual obligation to perform the services or training and must receive no remuneration from a U.S. source.

- ✓ 입국 시 해당 계약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계약서상 설치·시운전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을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해당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계약서에는 "install, service, or repair commercial or industrial equipment or machinery purchased from a company outside the United States"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의 설치·정비·수리) 또는 "to train U.S. workers to perform such services" (해당 장비의 설치·정비·수리 업무 수행을 위한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와 같은 업무 범위(work scope)가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B-1 비자상 예외(after-sales service)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예시문구: "Seller shall provide installation, testing, and training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equipment purchased under this Agreement. Such services shall be performed by Seller's technical personnel possessing specialized knowledge necessary to fulfill Seller's contractual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된 장비의 설치, 시험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서비스는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전문지식(특수 기술)을 보유한 판매자 소속 기술 인력이 수행하도록 한다.

- ✓ 장비 구매계약에 포함된 장비 설치, 시운전의 경우, 직접 시공·장비 조작 등 현장근로(on-site labor)를 수행하는 것은 B-1 비자 목적상 금지됨!
- ✓ 특히, B-1 비자 소지자가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조작하거나 육체적·기술적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로 시작된 문제가 곧바로 이민법 위반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

예시: B-1 비자 소지자가 자개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 문제에서 시작된 사건이 ‘무단 근로(unauthorized employment)’ 여부에 대한 이민 당국의 조사로 확대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9 FAM 402.2-5(E)(1)(U)(b)

These provisions do not apply to an applicant seeking to perform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whether on-site or in-plant. The exception is for an applicant who is applying for a B-1 visa for supervising or training other workers engaged in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but not actually performing any such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6) B-1 비자 관련 금지되는 활동

○ 미국 내 급여, 보수의 수령 및 근로 제공 행위 (설치·시공·장비조작 등)

- ✓ 다만,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장비 설치·교육·훈련 등의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단, 이러한 경우에도 보수(급여·수당 등)의 수령, 계약서에 명시된 “설치”의 범위를 벗어난 장비의 직접 시공, 장비의 운전 등 노동행위는 금지됨.
- ✓ 이러한 경우 보수(급여·수당 등)는 반드시 한국 본사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직접 시공·장비 운전 등 미국 현지 인력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행위는 금지.

○ 건설

- ✓ 9 FAM 402.2-5(E) 조항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건설(construction) 작업은 B-1 비자 하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활동임.
- ✓ 2001년 5월 24일, 미국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은 이민귀화서비스국(INS)과 협의 후,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전보(telegram)를 송부하여, 구체적으로 건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예시로 들며, 해당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B-1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advisory opinion)을 거칠 것을 권장함.
- ✓ 국무성 전보에서 명시한 건설 관련 금지 활동 예시:

예시1: 설치·정비·수리 관련: 유틸리티(전기, 가스, 수도 등) 설비, 건물의 구조·벽체·기초 등(fabric of any building or structure), 건물 또는 구조물의 일체형 부품(integral part)으로 작용하는 기계·장비

예시2: 노동직종 통상 업무: 일반 노무자 (laborers), 밀라이트 (millwrights), 전기공, 배관공, 목수, 단열공, 철골공, 장비 운전공, 용접공, 엘리베이터 설치공, 도장공 등

예시3: 산업 장비 및 생산 시스템의 설치: 조립 라인(assembly lines), 컨베이어 시스템, 크레인, HVAC, 엘리베이터, 보일러, 터빈 등, 산업 장비의 철거 또는 해체

예시4: 부지 조성 및 유틸리티 연결: 전기·가스·수도 등의 서비스 연결 작업, 위 유틸리티가 건물의 일체형 설비로 작용하는 경우

On May 24, 2001, the Department of Stat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disseminated a telegram to all diplomatic and consular posts providing that posts shall seek an advisory opinion when an alien is applying for a B-1 visa to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 “(1)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Utility services, any part or the fabric of any building or structure, and installation of machinery or equipment to be an integral part of a building or structure; or
- (2) Work normally performed by laborers; millwrights; heat and frost insulators; bricklayers; carpenters and joiners; electrical workers; operating engineers (including heavy equipment operators); elevator constructors; sheet metal workers; teamsters; boilermakers; residential commercial or industrial painters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all surface coatings, no matter how applied); bridge, structural and ornamental ironworkers; plumbers and pipefitters; roofers; plasterers and cement masons; or

(3) Work involving installation of assembly lines; conveyor belts and systems; overhead cranes, heating, cooling, and ventilation or exhaust systems; elevators and escalators; boilers and turbines; the dismantling or demolition of commercial or industrial equipment or machinery if the equipment or machinery is an integral part of a building or structure; whether on-site or in-plant; or
(4) Site preparation work and services installation (for example electricity, gas, water) and connection of such services to commercial or industrial equipment or machinery if the equipment or machinery is to be an integral part of a building or structure.”

- 본사 근무를 대체하는 상주 형태의 근무 또는 장기 파견

(7) ESTA (무비자 프로그램)

- B-1 과 동일한 활동 범위가 원칙적으로 적용됨

예시: 회의 참석, 계약 협의, 기술 교육·감독 등 비노동성 상용 활동은 허용

- ✓ 다만, B-1 비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after-sales service'(계약상 의무에 따른 장비 설치·교육·훈련 등)의 경우, 동일한 예외가 ESTA 입국자에게 공식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미국 정부의 명확한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 외교부와 미국무부 간 논의가 있었으나,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음.
- ✓ ESTA 는 원칙적으로 B-1 과 동일한 목적·활동 범위를 전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무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임. 다만, after-sales 목적의 활동은 ESTA 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B-1 비자 이용을 권고함.
- ✓ 따라서, ESTA 입국자는 after-sales 목적의 현장 방문이나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은 자제하고, 통상적 상용 방문(Business Visit)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권고됨.

- 체류기간은 최대 90 일로 제한되며,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불가

- ESTA 입국 시 허용된 단기 상용(Business) 또는 관광(Travel) 목적과 실제 활동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향후 ESTA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5. E-1/E-2 비자 (무역인/투자자 비자)

(1) 요건

1) 기업 간 관계 요건

- E-1 비자: 미국과 무역조약을 체결한 국가(한국은 조약 체결국에 해당) 소속 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무역(Substantial Trade)을 수행해야 하고, 전체 무역량 중 대미국 교역량이 50% 이상이어야 함

8 C.F.R. § 214.2(e)

Treaty traders and investors—(1) Treaty trader. An alien, if otherwise admissible, may be classified as a nonimmigrant treaty trader (E-1)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101(a)(15)(E)(i) of the Act if the alien:

(i) Will be in the United States solely to carry on trade of a substantial nature, which is international in scope, either on the alien's behalf or as an employee of a foreign person or organization engaged in trade principal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eaty country of which the alien is a national, taking into consideration any conditions in the country of which the alien is a national which may affect the alien's ability to carry on such substantial trade;

- E-2 비자: 미국과 무역조약을 체결한 국가 소속 법인이 미국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Substantial Investment)하고, 투자 주체인 법인이 미국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그 경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control)을 보유해야 함.
- 대부분의 경우에 E-1 비자보다 E-2 비자가 선호됨.

2) 출장자의 직무 요건

- E-1 비자: 조약국 국민이어야 하고, 보통 경영진급 또는 실무진급이 대상이 됨.
 - ✓ 출장자의 학력, 미국에서의 직무소개서, 연봉 등 관련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 E-2 비자: 조약국 국민이어야 하고, 감독·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을 수행할 필수 직원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함

(2) 비자 발급 절차

- DS-160 작성 → ②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 ③ 여권에 E-1/E-2 비자 스탬프 발급의 절차를 따름.
- 비자 발급 시 기업의 요건(무역 또는 투자)과 파견자의 직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소유구조, 투자금, 무역거래 내역,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등이 중요 증빙자료로 제출 필요.

(3) 유효기간

- E-1 비자: 최초 2년 + 이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비자 기간 만료 시 출국할 의사를 유지해야 함)
 - ✓ E-1 비자 소지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 시 자동으로 2년의 체류기간이 다시 부여됨
- E-2 비자: 최초 2년 + 이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비자 기간 만료 시 출국할 의사를 유지해야 함)
 - ✓ E-2 비자 소지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 시 자동으로 2년의 체류기간이 다시 부여됨

(4) 특징 및 유의사항

- 출장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 시 승인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
- E-1/E-2 비자 소지자는 그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 미국 체류 종료 시 출국 의사(intention to depart) 소명 필요

8 C.F.R. § 214.2(e)(1)(i) :

Intend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reaty

trader (E-1) status.

8 C.F.R. § 214.2(e)(2)(iii):

Intend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reaty investor (E-2) status.

- ✓ 비자 인터뷰 및 입국심사 시,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거나 이민할 의도가 없으며, 체류 목적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복귀할 계획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한국 내 직장, 가족, 재산, 사회적 관계 등 본국과의 지속적·실질적인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등)를 구비하는 것이 권장됨.
- ✓ 영주권(Immigrant Visa 또는 Permanent Residence) 신청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으며, 이민 의사로 간주되는 행위는 해당 비자 갱신 또는 입국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음.

(5) 허용되는 활동

- 파견자는 비자 발급 시 승인된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기업의 무역 활동(E-1) 또는 투자·경영 활동(E-2)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이 허용됨.
- E-1의 경우, 미국 관련 무역 운영, 무역량 관리, 거래처 협의, 계약 관리 등 무역 관련 경영·전문 업무 수행 가능.
- E-2의 경우, 미국법인 운영·관리, 투자자 자금 관리, 경영 의사결정, 감독직 또는 고도 전문기술 역할 수행 가능.
- E-1/E-2 소지자는 위 허용된 활동에 있어서는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직접 임금 수령 가능.

(6) 금지되는 활동

- E-1/E-2 소지자는 승인받지 않은 직무 활동(예: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직무기술서와 무관한 업무, 무자격 직종) 수행 금지.

III. 출국 전 사전 준비 절차

1. 주재원(L-1) 비자

(1) 파견 관련 요건

- 파견 대상자는 L-1 비자 요건(관리자·임원 또는 전문지식보유자)에 부합해야 함.
- 파견자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HL Mando Global(본사 또는 해외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해야 함.

(2) 준비 자료

- 미국 내 파견 대상 법인(HL Mando America 등)의 계열사 관계 및 영업활동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함.
- 조직도,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사업계획서, 인사명령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L-1 신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

(3) 초청 레터(Invitation Letter)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 파견 목적 및 기간
- 수행할 직무(활동 범위)
- 비용 부담 주체(예: HL Mando Global 본사)
-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점
 - ✓ L-1 비자 신청을 위해 I-129 Petition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하는 비이민 취업비자) 또는 I-129S (대사관 제출시) 및 DS-160(비자 신청서) 작성 후 비자 인터뷰를 준비해야 함.
 - ✓ 필요 시 USCIS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추가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둘 것.

2. 단기출장자(B-1/ESTA)

(1) 사전 검토 사항

- 출장자는 입국 목적이 회의·협의·기술교육 등 B-1 범위 내인지 사전 검토
- 초청 레터에 출장 목적·기간·활동 범위·비용 부담 주체 명시 및 “불법취업 금지·보수 수령 불가” 문구 기재
- 출장계획서(체류 일정·방문지·비상연락망 포함) 작성
- 항공권·호텔예약·보험가입 증빙 정리해 둘 것

(2) 입국 시 유의 사항

- 입국 시 여권·비자(B-1/ESTA)·초청 레터·출장 명령서를 반드시 지참할 것.
- B-1 비자 소지자 중 ‘after-sales service’(계약상 의무에 따른 장비 설치·교육·훈련 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관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함.
 - ✓ 특히, 장비 구매계약서에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해야 하며, 계약서가 국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notarized)된 영문 번역본을 함께 지참할 것이 권장됨.

3. 무역인/투자자(E-1/E-2) 비자

(1) 준비 자료

- DS-160(온라인 비자 신청서) 및 DS-156E(상사 주재원 비자 신청서) 작성
- E-1 비자: 파견 대상자가 소속된 법인의 상당한 무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년간의 송장, 선하증권, 무역계약서, 거래대금 수령 내역 등)

- E-2 비자: 파견 대상자가 소속된 법인이 미국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투자금 송금내역, 주주명부, 주식 양수도 계약서, 법인 등기부, 회계 감사 보고서 등)
- 파견 대상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등 비자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필요 시) 미국 내 고용인 현황표 및 향후 고용 계획 (E-2 의 경우, 투자금이 실제 사업 운영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됨)

(2) 인터뷰 시 유의 사항

- 사업계획, 무역실적, 투자내용 등을 상세히 물어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 필요
- 파견 대상자가 경영·관리직(executive/supervisory position) 또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역량(essential skills)을 보유한 인력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IV. 입국심사 대응 및 초기 정착

1. 입국 목적 진술

(1) 진술 관련 유의 사항

- 입국 목적 진술은 비자 유형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되, 비자상 허용되지 않는 근로·영업활동 등은 언급하지 말고, 관련 질문을 받을 경우 허용된 활동 범위 내에서 명확히 답변할 것.
 - ✓ **L-1 비자 보유자:** 입국 시 목적을 *Intra-company transfer for managerial or technical duties* (회사 내 관리자 또는 전문인력 파견 목적)로 명확히 진술할 것.
 - ✓ **B-1/ESTA 방문자:** 입국 시 목적을 *Business meeting / Technical training / Conference attendance* (비즈니스 미팅·기술 교육·회의 참석 등 실제 활동 범위 내 목적) 등 실제 활동 범위 내에서 간결하게 설명할 것.
 - ✓ **E-1 비자 보유자:** 입국 시 목적을 *To engage in and oversee substantial trade activities between the Korean headquarters and the U.S. entity*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실질적 무역활동 수행 및 감독 목적) 등으로 설명할 것.
 - ✓ **E-2 비자 보유자:** 입국 시 목적을 *To manage and oversee operations of the U.S. investment company under the E-2 visa* (E-2 비자에 따라 미국 투자법인의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명할 것.
- 불필요한 세부 설명이나 즉흥적인 진술은 피하고, 서류와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예시 상황 1 (B-1/ESTA 방문자)

CBP: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the U.S.? (미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Traveler: I'm here for business meetings with our U.S. partners. (미국 내 협력사와의 비즈니스 미팅 참석 목적입니다.)

(또는) I'm attending a technical training program organized by our U.S. affiliate.

(미국 현지 계열사가 주최하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유의사항: “work” 또는 “employment” 와 같은 단어는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training / meeting / conference /installation as part of a purchase contract* 등 실제 허용된 활동만 언급할 것.

예시 상황 2 (L-1/ E-1/ E-2 비자 보유자)

CBP: What will you be doing in the U.S.? (미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실 예정입니까?)

Traveler:

(L-1의 경우) I'm here for an intra-company transfer to our U.S. branch to oversee operations. (미국 지사로의 회사 내 파견 근무로, 현지 운영을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E-1의 경우) I'm here to engage in and oversee trade activities between our Korean headquarters and the U.S. entity.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의 무역 활동을 수행 및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E-2의 경우) I'm here to manage and supervise the operations of our U.S. investment company. (미국 내 투자법인의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함입니다.)

유의사항: “employment” 와 같은 단어는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상황에 맞게 “transfer,” “manage,” “oversee,” “perform duties” 등의 표현 사용.

비자 서류와 일관된 진술 유지하도록 함(근무지 주소, 구체업무, 일정)

(2) 입국 후 유의 사항

- 입국 후 24 시간 이내 CBP I-94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search/recent-search>)에서 여권 번호, 영문 성명,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확인하며, Class of Admission 및 Admit Until Date 확인 후 출력·보관

- B-1 비자 소지자 또는 ESTA로 입국한 경우, I-94에 반드시 B1 (business) 또는 WB (waiver business)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

예시:

Get Most Recent I-94

Get your most recent I-94 form to prove your legal visitor status in the United States

Traveler History

Most Recent I-94

Note to employers, local, state or federal agency granting benefits:

Please visit the CBP I-94/I-95 Website and click on the tab for "Get Most Recent I-94/I-95" to perform a search for the applicant to confirm that the biographic and travel information displayed on this I-94/I-95 printout matches the "Get Most Recent I-94/I-95" returned results for this applicant. Reference the [CBP I-94/I-95 Website FAQs](#).

Admission I-94 Record Number: [REDACTED]
Arrival/Dates: [REDACTED]
Class of Admission: B1
[REDACTED]
[REDACTED]

Details provided on the I-94 Information form:

Last/Surname: [REDACTED]
First (Given) Name: [REDACTED]
Birth Date: 1980 Au [REDACTED]
Document Number: [REDACTED]
Country of Citizenship: Korea, South

Edit Search

Get Traveler History

예시:

Get Most Recent I-94

Get your most recent I-94 form to prove your legal visitor status in the United States

Traveler History

Most Recent I-94

Note to employers, local, state or federal agency granting benefits:

Please visit the CBP I-94/I-95 Website and click on the tab for "Get Most Recent I-94/I-95" to perform a search for the applicant to confirm that the biographic and travel information displayed on this I-94/I-95 printout matches the "Get Most Recent I-94/I-95" returned results for this applicant. Reference the [CBP I-94/I-95 Website FAQs](#).

Admission I-94 Record Number: [REDACTED]
Arrival/Dates: [REDACTED]
Class of Admission: WB
[REDACTED]

Details provided on the I-94 Information form:

Last/Surname: [REDACTED]
First (Given) Name: [REDACTED]
Birth Date: 1991 Ja [REDACTED]
Document Number: [REDACTED]
Country of Citizenship: Korea, South

Edit Search

Get Traveler History



- I-94 에 Class of Admission 에 B2 (tourist) 나 WT (waiver tourist)라고 나오는 경우 즉시 법무팀 보고
- 법무팀에서는, 해당 문제 (B2 또는 WT)를 USCBP Deferred Inspection Office에서 수정할 수 있을지 검토
 - ✓ 예: Deferred Inspection Office
157 Tradeport Drive, Suite C
Atlanta, GA 30354
 - ✓ <https://www.cbp.gov/about/contact/ports/deferred-inspection-sites>
- I-94 의 ‘admit until date’는 비자 만료일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임. 이는 두 날짜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기 때문임. 비자 만료일은 미국 입국이 가능한 마지막 날짜를 의미하는 반면, I-94 의 ‘admit until date’는 실제 입국 시점에 국경심사관이 부여하는 체류 허가기간을 의미함.
예를 들어, B1 또는 ESTA 입국자의 경우 통상 입국일로부터 3 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므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I-94 상의 ‘admit until date’는 그보다 짧게 표시될 수 있음.
따라서 체류기간의 만료 여부는 비자 만료일이 아니라 I-94 에 기재된 ‘admit until date’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항시 여권, I-94 출력본, 귀국 항공편 출력본, 입국 초청장을 소지.

참고사례: 2025년 9월 4일 ICE 단속 당시, 한국 출장자 중 일부가 귀국 항공편을 제시하여 단속에서 풀려나온 사례가 있었음. 따라서 출장자는 위 서류들을 항상 휴대하여, 필요 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V. 체류 중 준수사항

1. 준수 사항

- 주재원의 고용관계는 한국 본사(HL Mando Global)에 유지되어야 하며, 미국 현지 법인은 단순 호스트(host) 역할만 수행함(단, E-1/E-2 비자 소지자의 경우 허용된 활동 범위 내에서 미국 현지 법인에 고용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임금 수령도 가능함).
- 현지에서 급여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Payroll Reporting 및 세무처리(소득세·사회보장세 등) 관련 법적 의무를 사전에 HR·법무팀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함.
- 승인된 L-1 비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근로·생산·영업활동 수행은 금지됨.
(예: 본래 직무 외 현장근로, 판매활동, 프로젝트 운영 등은 불허)
 - ✓ 프로젝트 범위나 담당 업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팀 (또는 필요 시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함.
- 또한, B-1/ESTA 방문자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의 근로·생산·영업활동은 일체 금지되며, 계약 협상·회의 참석·기술교육·감독 등 비노동성 상용 활동에 한하여 허용됨.
 - ✓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취업(unauthorized employment)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부, 체류자격 취소 또는 향후 ESTA 이용 제한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음.
- 체류기간의 연장, 직무내용 변경, 근무지 또는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10 일 이내 HR 및 법무팀에 서면 보고해야 함.
 - ✓ 주소 변경을 미신고할 경우, USCIS 기록 불일치로 인하여 체류자격 박탈 등 리스크 발생 가능성 있음에 유의.

VI. 체류 연장 및 복귀 절차

1. 관련 준수 사항

- **L-1 비자:** 비자 만료 6 개월 전 미국 현지 법인은 청원인 (Petitioner)로서 USCIS 에 연장신청(I-129 Extension)을 진행해야 하며, 주재원은 연장 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적시에 제출하여 회사의 신청 절차에 협조해야 함.
- **B-1 비자:** 필요 시 미국 내에서 I-539 를 통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 개월) 신청이 가능함. 다만, 미 국무성에서는 I-94 에나온 체류 기한으로부터 최소 45 일전 연장 신청을 권고함.
방문목적이 B-1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ESTA:** 체류기간 연장 불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불가하며, 90 일 내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함.
- 귀임 시에는 HR 에 복귀보고서 및 업무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파견 종료일 기준으로 비자-I-94 만료일을 동시에 확인하여 체류기록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점검해야 함.
 - ✓ 체류기록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예: I-94 만료일 초과 체류 등)에는, HR 및 법무팀이 즉시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정 절차 진행함.

2. 동일 인물의 재 파견 제한

- **L-1B (전문지식보유자):** 최대 5 년, L-1A (관리자·임원)는 최대 7 년까지 체류 가능함.
- **B-1 비자:** 누적 체류 제한 규정은 없으나, 반복적 장기 방문은 입국심사 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 인물의 빈번한 재파견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ESTA:** 최근 2 년 이내, 90 일 체류 기간을 모두 채워 사용한 이후 재방문한 출장자의 경우 입국 거절을 당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VII. 체포·구금·조사 대응 행동요령

1. 기본 원칙

- 침착하게 대응하고 모든 상황을 발생 또는 인지하는 즉시 회사에 보고
 - ✓ 구금 장소 및 담당 조사관 정보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하여 회사에 보고
- 불필요한 진술·서명·전자기기 제출 금지
 - ✓ 영문 문서나 진술 요구를 받은 경우, 내용 이해가 불명확하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즉시 법률 자문 요청

예시응답: “I prefer to consult with my lawyer before answering. (답변 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고자 합니다.)”
- 통역 및 변호사 조력 요청 가능
- 조사기관(ICE, CBP 등) 및 조사관/담당자의 소속 확인
- Search/Arrest Warrant 의 사본을 요청하고, 사본을 법무팀과 공유
- 미리, 회사의 변호사를 지정한다는 DHS 양식인 G-28 을 구비 (사내 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미리 지정).

해당 서류는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g-28.pdf>에서 작성 가능.

 - ✓ G-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및 그 산하기관(USCIS, ICE, CBP 등)에, 해당 외국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위한 양식임.
 - ✓ G-28 이 제출되어야 이민국, 세관, 이민단속기관(ICE) 등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서류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변호사는 공식적인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에 접근하고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됨.

2. 즉시 연락 체계

- 현지 법인 HR or 법무팀 or 업무총괄 or 동행자(있는경우)에 보고 → 현지 법인에서 본사 HR or 법무팀에 보고
- 필요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 및 주미대사관에 연락

3. 진술 시 유의사항

- 모든 진술은 기록되므로 불확실한 답변·추측 금지
 - ✓ 조사 중에는 모든 발언이 공식 진술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측성 답변을 하지 말 것.
 - ✓ 진술 요청을 받은 경우, 답변 전에 반드시 회사 지정 변호사 또는 관련 자문과 사전 협의할 것.
 - ✓ 필요 시, 다음과 같은 응답으로 우선 대응할 것

예시응답: “I’m not sure about that information, and I prefer to discuss it with my lawyer first. (해당 내용은 확실하지 않아 우선 변호사와 상의하고자 합니다)”와 같은 응답으로 우선 대응할 것.
- 문서 이해 불가 시 통역 요청
 - ✓ 예시응답: “May I have an interpreter so I can understand this document before I sign it? (이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명 전에 통역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변호사 또는 회사 담당자 도착 전 서명 금지
- 체류자격 관련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
 - ✓ 예시응답: “I am here under an intra-company transfer approved by USCIS. My employer is in Korea.”

4. 구금(Detention) 시 조치

- 회사 및 가족 통보, 영사조력 및 변호사 연락. 단, 구금시설에서 부여하는 A-number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연락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침착하게 구금시설의 프로세싱에 협조.
- 건강 이상 시 구금시설 담당자(Detention Officer) 또는 이민단속기관(ICE/CBP) 담당자에게 즉시 의료지원(medical assistance)을 요청하며, 필요시 영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의료조치 요청.
 - ✓ 예시응답: “I need medical assistance, please contact a doctor or my consulate.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사나 제 영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 구금 또는 조사 과정에서 여권·휴대전화·노트북 등 개인 소지품이 압수 또는 보관될 경우, 압수된 물품의 목록을 즉시 확인하고, 조사 종료 후 해당 물품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
 - ✓ 예시응답: “May I have a written list of the items taken from me, and how I can get them back? (제 소지품 목록과 반환 절차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5. 사후 보고 및 재발 방지

- 사건 발생 후 24 시간 내 Incident Report 제출
 - ✓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관련 기관(ICE, CBP 등), 담당 조사관 이름, 주요 경과, 조치 내역, 현재 상태를 포함해야 함.
 - ✓ 구금 또는 조사 종료 후 변호사·영사·회사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및 결과 요약을 함께 기재할 것.